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식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
----------	-----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6일

발 의 자 : 노식래 (1명)

찬 성 자 : 김재형, 박상구, 신정호, 전석기,
고병국, 이승미, 김정환, 이정인,
이영실, 김경영, 노승재, 박순규,
송아량, 송도호, 김종무, 송명화,
(16명)

1.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위원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예산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조항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참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예산정책위원회) ① 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 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예산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0조의2(예산정책위원회) ① 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 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예산정책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